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5. 10. 10.>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제3조제3항 관련)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어학 분야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

언어 \ 시험	FLEX	기타
영어	1A (1429점 이상)	TOEFL CBT(IBT) 287(117)점 이상 TOEIC 965점 이상 TEPS 930점 이상
중국어	1A (1429점 이상)	신 HSK 6급(210점 이상)
일본어	1A (1429점 이상)	JLPT N1(176점 이상)
프랑스어	1A (1429점 이상)	DALF C2
스페인어	1A (1429점 이상)	DELE C2
러시아어	1A (1429점 이상)	토르플 4단계
독일어	1A (1429점 이상)	괴테어학원 평가 GDS 괴테어학원 평가 ZOP/KDS

2. 제1호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

채용예정직위 \ 시험	TOEFL CBT(IBT)	TOEIC	TEPS
5등급 이상 직위	243(97)점 이상	870점 이상	800점 이상
4등급 이하 직위	227(86)점 이상	790점 이상	700점 이상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외국어의 어학능통자 채용을 위한 경우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학검정시

험 외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어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시험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한 어학검정시험은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각 어학검정시험실시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이 없거나 5년 이상일 경우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5년 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한다.
4. 외교부장관은 위 표와는 별도로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어학검정시험의 종류, 성적기준 및 적용 대상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